

「2025년 대전 중소·벤처기업인의 날」

포상 후보자 추천 공고

대전 벤처산업 및 지역경제 발전에 공헌한 우수 중소·벤처기업을 격려하기 위해 『2025 대전 중소·벤처기업인의 날』을 개최함에 따라, 회원기업에서는 포상 후보자를 추천 바랍니다.

2025년 10월 27일
이노폴리스벤처협회장

1. 개요

☐ 추진배경

- 우리 지역 우수 중소·벤처기업에 기업 역량강화 및 지속발전을 도모하고자, 『2025 대전 중소·벤처기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관내 중소·벤처 기업인을 대상으로 표창 및 감사패를 수상함

<포상 수여 일정 >

- ☐ 행사명 : 2025년 대전 중소·벤처기업인의 날
- ☐ 일 시 : 2025년 12월 17일(수), 17:00
- ☐ 장 소 : 골프존 조이마루 1층 챔피언스홀 (유성구 엑스포로97번길 40)

☐ 포상구분

구분	유공 구분	포상내용
대전광역시	지역 벤처기업 활성화 유공	감사패 2인

2. 자격 및 추천제한

□ 수공기간

- 표창은 3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관내 기업 대표자

<예외> 추가수공기간 적용

- 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해당분야에서 일정기간 추가적으로 공적을 쌓으면 동일한 종류의 상위 훈격 정부포상을 받을 수 있음 (표창은 3년 이상의 추가적인 수공기간이 있을 경우 추천될 수 있음)

□ 재포상 금지기간

- 정부 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에 관계없이 일정기간동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으며,
- 일정기간이라 함은 표창의 경우, 과거 수여일로부터 금회 추천일 까지 1년이 지나야 추천될 수 있음

* 상훈업무관리시스템에 후보자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과거의 포상이력 확인 가능

□ 포상 제한

-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표창(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 내에서 동일한 종류의 표창이나, 하위 등급의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추천 제한

- 별첨의 추천제한의 기준 참조

3. 절차 및 일정 (변경될 수 있음)

①	②	③	④
공적조서 접수	IVA 심사위원회 개최	대전광역시 심사	수여행사
11.5(수) 17시까지	11월 중순 예정	일정미정	12.17(수) 예정

4. 공적조서 제출 방법

☐ 공적조서 작성 및 제출

- 제출기한 : 2025년 11월 5일(수) 17:00까지
- 제 출 처 : young@diva.or.kr / 042-368-9720
- 제출서류 : 공적조서 양식 활용 작성, 공적내용의 증빙내용 파일을 취합하여 ZIP파일 형태로 묶음 제출

5. 관련문의

☐ (사)이노폴리스벤처협회

- 신혁준 실장 042-867-9691
- 조지영 과장 042-368-9720

[별첨] 추천제한의 기준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2) 형사처분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아)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3)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정부 표창 규정」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단체는 추천 가능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8) 사회적 물의 등 유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 정부포상 운영지침, 중소벤처기업부 공적심사규정 등에 따름